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29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서삼석·박홍배·정을호

이개호・문금주・박수현

김원이 • 위성곤 • 이병진

문대림 · 소병훈 · 전종덕

신정훈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동물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수 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진료기술의 보고	호) (생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누구든지 동물병원의 의료
		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
		<u>괴·손상하거나 동물병원을 점</u>
		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u>아니 된다.</u>
<u><신 설></u>		③ 누구든지 진료행위가 이루
		어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
		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u>된다.</u>
제39조(벌칙) <u><신 설></u>		제39조(벌칙) ①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
		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u><신 설></u>	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에 처한다.</u>
<u>①</u> · <u>②</u> (생 략)	③ · <u>④</u> (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